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귀농인의 주소지 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내 용

경상남도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에서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귀농인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제4항 본문 단서에서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 군과 그 지역과 인접한 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세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에서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농지 소재지 군 및 그 지역과 인접한 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3건 / 6,407천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고 부과

누락 하였다.

[표] 귀농인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방세 추징내역

지자체명	납세의무자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성명	주민번호				
합 계			6,407,320	5,891,250	321,940	194,130
밀양시	○○○	*****-*****	2,330,800	2,094,540	118,130	118,130
하동군	○○○	*****-*****	2,784,520	2,656,710	127,810	-
합천군	○○○	*****-*****	1,292,000	1,140,000	76,000	76,000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 하동군수, 합천군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추징하지 못한 취득세 등 3건 / 6,407천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